

상장사 중소기업의 투명회계·적법세금·성공경영 정보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공인회계사 조세 eAnSe.com

온라인 30분내 Q&A 문서답변과 방송



2025/ 7/ 2 통권 1734호

CEO·CFO·COO·회계책임자·조세전문가·재경실무자·총무담당자·모든 관리자용 **名品** 주간지

소규모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고민,
국세청이 도와드려요

CFO·회계실무자·조세전문가 정보

- OECD 기업지배구조원칙의 이해(8):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회복력
- 유형자산의 감액손실에 대한 세무회계처리 방법
- 소규모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고민, 국세청이 도와드려요
- 금융소득종합과세 문답
- '24 회계연도 상장법인 재무제표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분석 및 유의사항 안내

CMO·마케팅 Tax consulting 섹션

-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상품판매시 제공된 할인쿠폰에 의한 직접 할인 금액은 매출에누리로 부가세 과표에서 제외함 (p.13)

전직원 회람 공지 MEMO+경영관리자의 재무의사결정과 稅計經營戰略

〈비상장·중소기업 주식평가방법〉

개념구분	구체적 평가방법
일반적 평가원칙	① 순손익가치의 60%+순자산가치의 40% ② 단,가중평균가액이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순자산가치의 80%를 적용함
부동산 등 보유비율 50% 이상인 과다보유법인	순손익가치 40% + 순자산가치 60%
부동산 80% 이상인 경우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의무)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의무규정)
주식 등 보유비율 80% 이상인 법인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의무규정)
최근 3년간 계속결손법인	손익가치의 60% + 자산가치의 40% 일반원칙 적용
사업개시 전,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휴·폐업법인	순자산가치로 평가
청산절차 진행 사업자의 사망 등 사업계속이 곤란한 법인	순자산가치로 평가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	비중소기업 및 비중견기업은 20% 할증

(안세회계법인대표이사 박윤중공인회계사작성)

안세회계법인
02-829-7557

회계·경리·세무·재무·인사·노무·총무·법무·기획·재경(AnSe consulting)
경영관리·총무 outsourcing + secretarial 서비스 + 중소기업창업·보육·지원센터

안건조세정보
02-829-7575

안세재경저널 회원용 · 2025년 7월 2일 (수) · 주간제 27호 · 통권 제 1734호 · 금요일

CMO·마케팅 Tax consulting 섹션

주간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통권 1734호 / 주간 27호

2025. 7. 2. (수)

· 발 행 인: 이윤선
· 제 작: (주)안건조세정보
· 대표전화: (02) 829-7575
· FAX: (02) 718-8565

목 차

- ♣ 회원가입 문의 안내
 - 서울·수도권·경기·인천
전화: (02) 829 - 7575
팩스: (02) 718 - 8565
 - 부산·경남
전화: (051) 642 - 3988
팩스: (051) 642 - 3989
 - 대구·경북
전화: (053) 654 - 9761
팩스: (053) 627 - 1630
 - 대전·충청
전화: (010) 3409 - 2427
팩스: (042) 526 - 1686
 - 수원·안산
전화: (010) 5255 - 6116

- ♣ 매월 구독·자문료 5만원
온라인 입금계좌
· 우리은행
594 - 198993 - 13 - 001

정회원(주간+월간 등)
월 구독료
5만원

eAnSe.com의 차별화특장

- ① 오늘 30분내 Q&A 전송
- ② 핵심내용 영문번역
- ③ 재경전반 동영상강의
- ④ 즉답(010-2672-2250)
- ⑤ 온라인 세무상담실
- ⑥ 모든 정보 통합검색
- ⑦ 마케팅 세무회계전략
- ⑧ CEO·CFO 경영에세이
- ⑨ 전담회계사 파견자문
- ⑩ 세무·회계·재경고문
- ⑪ 최고경영자의 세금전략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최고경영자 재경전략	비상장·중소기업 주식 평가방법	표지
CEO의 경영산책	OECD 기업지배구조원칙의 이해(8):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회복력	2
세무·회계상담자문 (남들은무슨고민할까?)	- 싱가포르 법인 행사 대금에 대한 면세 적용 - 무형자산 양도 - 국내사업장이 있는 해외법인과외 거래 시 문의	5 6
눈에 맞는 절세미인	유형자산의 감액손실에 대한 세무회계처리 방법	7
매일 절세재무요점	- 국제감면 조특법 개정 발의안 - TDF와 TF 비교 분석	10 11
직장인Survival	일 잘하는 사람들의 태도, 작은 습관 5가지	12
최신 판례예규 (이런저런유권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2제1항에 따른 조세특례의 제한을 적용함에 있어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여러 차례 투자한 경우 "최초 보유일" 판단은 최초로 증권에 투자한 날을 기준으로 함 (사전법규부가-470, 2024.10.30) - 물적분할에 따른 법인설립은 창업에 해당하지 않음 (기준법규법인-91, 2024.07.30)	13 14
세정뉴스와 해설	국세청, 내달부터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접수...명문장수기업?백년가게도 대상	15
마케팅 Tax consulting	국내상장 ETF와 해외상장ETF의 양도차손익은 통합산할 수 없음	13
세무정보	- 소규모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고민, 국세청이 도와드려요 - 금융소득종합과세 문답 - 수입물품 과세자료 제출 간소화	16 23 39
회계정보	- "24 회계연도 상장법인 재무제표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분석 및 유의사항 안내	41
세무환율정보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38

OECD 기업지배구조원칙의 이해(8):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회복력



이재권 안세회계법인 지속가능경영자문센터장
공인회계사, 경영학박사, CIA

한국윤리경영학회 산학협력 부회장 (현), 서강대 내부감사전문과정 교육운영위원
서울시립대, 국립 한밭대 겸임교수, 한국회계정보학회 부회장
한국경영교육학회 산학협력 부회장,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민관협의회 공정신뢰분과위원장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ERS(Enterprise Risk Services) 부대표
한국공인회계사회 정보기술연구위원장
Touche Ross Australia, Melbourne : Advanced Technology Group 근무

기업의 건전한 거버넌스의 구축 운영의 관점에서 OECD 기업지배구조원칙(2023) 원칙 중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회복력(Sustainability and resilience) 대해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 G20/OECD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 2023, OECD Publishing, Paris, pp.45-48 요약 분석 인용함.

B. 기업 지배구조 프레임워크는 회사, 주주 및 이해관계자 간의 대화를 통해 회사의 비즈니스 전략과 중요한 사항에 대한 평가와 관련된 지속 가능성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수 있어야 한다.

주주총회는 구조화된 의사결정 과정을 위한 중요한 장을 제공한다. 기업, 주주, 임직원 및 기타 이해관계자 간의 대화는 경영진의 의사결정 과정을 알리고 장기적인 비즈니스 전략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대화는 다양한 이슈에 유용할 수 있지만, 이는 단기적으로 투자로 인한 현금 유출이 발생하나 장기적인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회사의 지속가능성과 회복탄력성을 개선하기 위한 의사결정에 특히 중요하다. 이러한 대화는 또한 회사가 어떤 지속가능성 문제가 중요한지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공개해야 한다. 주주와의 대화 시 회사는 주주에 대한 공평한 대우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B.1. 기업 지배구조 프레임워크가 기존 기업이 영리 목적과 공익 목적을 모두 포함하는 기업 형태를 채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 이러한 프레임워크는 반대하는 주주의 권리에 대한 적절한 고려를 해야 한다.

여러 국가에서는 기업이 환경 및 사회 문제와 관련된 명시적인 목표를 추구할 수 있도록 공익 법인 또는 기타 특정 법인 형태를 설립하기 위한 프레임워크가 있다. 이러한 경우 기존 영리 기업이 공익 목적을 채택하는 경우 반대 주주 권리를 적절히 고려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반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가능한 해결책으로는 회사가 정관에 공익 목표를 추가하기 위해 소수 주주의 동의나 대주주의 승인을 요구하거나 반대 주주가 공정한 가격에 주식을 회사에 다시 팔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는 것이 있다.

C. 기업 지배구조 프레임워크는 이사회가 기후 관련 물리적 및 전이 위험(climate-related physical and transition risks)을 포함한 지배구조 관행, 공시, 전략, 리스크관리 및 내부 통제 시스템을 검토, 모니터링 및 지휘 감독시 중요한 지속가능 리스크와 기회를 적절히 고려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사회는 주요 기능을 수행할 때 중요한 지속 가능성 문제에 대한 검토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이사회는 지속 가능성 관련 공시의 신뢰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효과적인 거버넌스와 내부 통제가 마련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이사회는 지속 가능성 문제가 기업의 리스크 프로필(risk profile)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방법을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평가는 또한 주요 임원 보수 및 지명(예: 임원 보상 계획에 통합된 목표가 정량화 가능한지, 재무적으로 중요한 위험과 연계되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지 여부) 또는 이사회와 위원회가 지속 가능성에 접근하는 방식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책임 있는 비즈니스 행동에 대한 OECD 실사 기준은 리스크 관리 시스템 및 프로세스에 지속 가능성 요소를 포함하는 중요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할 수 있다.

C.1. 이사회는 기업의 로비 활동이 지속 가능성 관련 목표와 일치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사회는 경영진이 이사회가 채택한 지속 가능성을 위한 장기 전략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회사를 대신하여 로비 활동과 재정을 효과적으로 감독해야 한다. 예를 들어, 탄소 가격 정책에 반대하는 로비는 회사의 단기 수익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되지만 저탄소 경제로의 질서 있는 전환을 위한 회사의 목표에는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로비 활동과 관련된 정치 기부금 공개를 감독하는 역할도 이사회에 포함된다.

D. 기업 지배구조 프레임워크는 이해관계자의 권리, 역할 및 이익을 고려하고 기업, 주주 및 이해관계자 간의 적극적인 협력을 장려하여 가치, 양질의 일자리, 지속 가능하고 탄력적인 기업을 창출해 한다.

기업 지배구조는 회사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기업 특유의 인적, 물적 자본에 경제적으로 최적의 투자를 하도록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임직원들에게 그들이 일하는 회사는 주된 소득원일 뿐만 아니라 삶의 많은 부분을 소비하는 곳이기도 하며, 회사의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이 그들에게 중요하다. 기업의 경쟁력과 궁극적인 성공은 투자자, 임직원, 채권자,

고객,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 공급업체 및 기타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다양한 자원 제공자들의 기여를 구체화하는 팀워크의 결과이다. 기업은 이해관계자의 기여가 경쟁력 있고 수익성 있는 비즈니스를 구축하는 데 귀중한 자원임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이해관계자 간의 가치 창출 협력을 촉진하는 것이 기업의 장기적인 이익에 부합할 수 있다.

D.1. 법률 또는 상호 합의를 통해 확립된 이해관계자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이해관계자의 권리는 대부분 법률(예: 노동법, 비즈니스법, 상법, 환경법, 파산법) 또는 기업이 존중해야 하는 계약 관계에 의해 확립된다. 일부 국가에서는 기업이 인권 및 환경 실사를 수행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다. 그러나 이해관계자의 이익이 입법화되거나 계약에 의해 확립되지 않은 분야에서도 많은 기업이 이해관계자에게 추가적인 약속을 하고 있으며, 이는 기업 평판과 기업 성과에 대한 고려가 더 넓은 이해관계를 인정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는 일부 국가에서는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과 관련 실사 기준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and associated due diligence standards for risk-based due diligence)을 사용하여 기업들이 비즈니스의 실제 및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식별, 예방, 완화하고 이러한 영향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설명하도록 하고 있다.

D.2. 이해관계자의 이익이 법으로 보호되는 경우, 이해관계자는 합리적인 비용과 과도한 지연 없이 권리 침해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법적 프레임워크와 절차는 투명해야 하며 이해관계자들이 합리적인 비용과 과도한 지연 없이 권리 침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

싱가폴 법인 행사 대금에 대한 면세 적용

Q 싱가포르 해외법인과 행사관련하여 해외송금 대금에 대해 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였습니다 (면세 적용)

싱가폴과 한국과의 이중과세방지협약에 의해 면세를 적용하는게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A 국내에서 비거주나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경우라도 해당 용역이 국내에서 소비 또는 공급되었기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외화획득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해 일정요건을 갖추면 영세율이 적용되는데, 귀사의 경우처럼 호텔업은 영세율이 인정되는 업종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내용은 부가가치세법 제24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한싱가폴 조세조약의 경우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는 소득에 대한 조세가 아니므로 조세조약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무형자산 양도

Q 회사의 소유중인 특허권을 특수관계법인인데, 양도시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 문의드립니다

1) 무상양도시(공동소유)

2) 유상양도시(가액을 얼마로? 계약서등 내용기재 필요사항등)

무상양도가 가능한지?

유상양도시에는 얼마로 해야하고, 계약서 등이 필요한지?

추후 특허연차료는 누가 내야하는지 등

A 무형자산의 무상양도가 가능한지의 여부는 세법에서 판단하는 사항이 아니고 거래당사자간에 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특수관계자와 무상으로 거래하여 법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 세법에서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므로 시가(감정가액)로 거래하시면 됩니다.

유상양도에 따른 구체적 계약내용은 법률전문가 등의 도움을 받아 당사자간에 결정하시면 됩니다.

국내사업장이 있는 해외법인과외 거래 시 문의

Q 국내사업장이 있는 해외업체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아 대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용역형태의 구조는

- 당사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해외업체에게 발주
- 해외업체는 국내에 있는 사업장(국내지점)에 다시 발주
- 해외업체의 국내지점에서 당사에게 물품을 납품
- 납품받은 후 당사는 해외업체에게 외화로 대금지급
- 해외업체는 해외업체의 국내사업장에 대금지급

이런 형태의 거래일 경우에 당사는 해외업체에 부가세없이 물품대금만 외화로 지급하면 되나요?

또한 해외업체와 해외업체의 국내지점간의 거래에서는 부가세가 부과되는지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지요?

(국내지점이 자산의 해외업체(본점)와의 거래에서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A 외국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는 경우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가격결정 등 계약체결권한 등을 가지고 있다면 국내지점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합니다.(국세청 유권해석 참조)

외국법인과 국내지점간의 세금계산서 발급여부는 구체적 계약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므로 관련사항은 국세청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 부가46015-160, 2000.01.20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갑)이 국내의 사업자(을)로부터 제품을 구입하여 국내의 다른 사업자(병)에게 재화를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의 사업자(을)로 하여금 직접 공급하도록 한 경우, 외국법인(갑)을 위하여 국내의 사업자(을)가 제품 인도와 관련한 가격결정 등 계약체결 권한을 가지고 이를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때에는 한·일 조세조약 제5호 및 법인세법 제94조에서 규정하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의 다른 사업자(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는 국내의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유형자산의 감액손실에 대한 세무회계처리 방법

상담실 백종훈 차장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시장에서의 교환가치 및 효용가치 등의 변동과 여러 가지 경제적 사건을 원인으로 그 가치가 변동되게 마련이다.

따라서 결산시에는 그 변동된 가치를 적정하게 평가하여 반영하여야 하는데, 유형자산의 경우에는 매년 의무적으로 그 가치를 평가하지는 않고 해당 자산의 공정가액을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일정 기간마다 재평가를 실시하거나 또는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이 있을때 감액손실을 반영할 수 있는데 감액손실에 대한 회계 및 세무처리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미래경제적 효익이 감소되는 경우 회계상으로 유형자산 감액손실 반영 가능함

현행 기업회계기준은 유형자산의 시장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한 경우, 자산의 사용범위 및 사용방법에 변화가 있어 심각한 물리적 변형이 발생하거나, 기업환경이나 경제환경의 변화로 인해 유형자산의 효용이 심각하게 저하되는 등 유형자산의 미래경제적 효익이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여러 경제적, 물리적 원인에 의한 자산의 가치감소를 공정하게 측정할 수 있다면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을 감액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0장 자산손상

20.7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할 때는 최소한 다음을 고려한다.

(내부정보)

- (4) 자산이 진부화되거나 물리적으로 손상된 증거가 있다.
- (5) 회계기간 중에 기업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유익적 변화가 자산의 사용범위 및 사용방법에서 발생하였거나 가까운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에는 자산의 유희화, 당해 자산을 사용하는 영업부문을 중단하거나 구조조정하는 계획, 예상시점보다 앞서 자산을 처분하는 계획 등을 포함한다.
- (6) 자산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증거를 내부보고를 통해 얻을 수 있다.

(7) 해당 자산으로부터 영업손실이나 순현금의 유출이 발생하고, 미래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20.8 자산의 진부화 및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인하여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중요하게 미달하는 되는 경우에는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조정하고 그 차액을 손상차손으로 처리한다.

20.9 문단 20.8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형자산의 경우에는 문단 20.7의 규정에 따라 유형자산의 손상징후가 있다고 판단되고, 당해 유형자산(개별자산 또는 유형자산만으로 구성된 현금창출단위 포함)의 사용 및 처분으로부터 기대되는 미래의 현금흐름총액의 추정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조정하고 그 차액을 손상차손으로 처리한다.

유형자산의 감액손실은 해당 유형자산의 회수가능가액과 장부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금액을 비교하여 처리하면 된다. 즉,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감가상각비와 회수가능가액을 차감한 잔액이 감액손실금액이 된다.

① 2024년1월 유형자산 취득(10,000에 취득)

차) 기계장치	10,000	대) 현금(보통예금)	10,000
---------	--------	-------------	--------

② 2024.12.31 감가상각반영(내용연수 10년, 정액법)

차) 감가상각비	1,000	대) 감가상각누계액	1,000
----------	-------	------------	-------

③ 2025.12.31 회수가능가액이 6,400인 경우

차) 감가상각비	1,000	대) 감가상각누계액	1,000
유형자산감액손실	1,600	감액손실누계액	1,600

※ 2026년분 감가상각비(1,000)를 우선 반영후, 당기의 감가상각비가 반영된 장부가액(8,000)에서 회수가능액(6,400)을 차감한 차액을 감액손실로 처리

④ 2026.12.31 감가상각반영

차) 감가상각비	800	대) 감가상각누계액	800
----------	-----	------------	-----

※ 감액손실반영후 장부가액 6,400을 남은 내용연수(8년)로 안분하여 감가상각반영

세무상으로 천재지변 등의 경우에만 유형자산의 감액손실 인정됨

법인세법에서는 시설개체나 기술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하거나 천재지변, 화재 등의 사유로 인한 감액손실외에는 유형자산감액손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진부화되거나 시장가치가 급격히 하락한 자산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자산 감액손실은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로 손금산입한 것으로 보아 시부인 계산하여 손금산입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즉,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무형자산의 감액손실을 반영한 경우 세무상으로는 해당 감액손실금액을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의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세무상 한도내에서만 손금반영하며, 한도초과로 인해 상각부인(손금불산입)된 감액손실 금액은 이후 사업연도의 시인부족액의 범위내에서 손금으로 추인한다.

♣ 서면2팀-1884, 2004.09.09

법인이 진부화되거나 시장가치가 급격히 하락한 유형·무형자산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자산감액손실을 계상한 경우 그 금액은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로서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 제23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각부인액을 이후 사업연도에 시인부족액 범위 내에서 손금으로 추인하지 아니하고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거 경정청구할 수 있는 것임.

- 안건조세총서, 기업경영회계·세무, 법인세법상세해설서
- 경제신문자료와 공공기관발표자료 등

월 — 국세감면 조특법 개정 발의안

대표 발의	내용
이학영 의원	스마트 안전 설비·자동화 장비·작업환경 개선 등 설비비용 세액공제 (대기업 25%, 중견기업 30%, 중소기업 35%)
한정애 의원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자녀 수에 따라 5~20% 포인트 상향 및 공제한도 자녀 수에 따라 50만~200만원 인상
김태년 의원	신재생에너지 발전 시설 투자금 세액공제(대·중견기업 20%, 중소기업 30%)
정태호 의원	국가전략기술 활용해 반도체·차전자·바이오 등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판매하면 최대 30% 세액공제
장철민 의원	전기차·자율주행차 사업화·연구개발 시설 투자금 세액공제 확대(대·중견기업 20%, 중소기업 30%)
송재봉 의원	노란우산공제 중도 해지 시 16.5%인 기타소득세 감면

화 — IRP와 연금저축 비교

	IRP	연금저축
투자 한도	위험자산 70% (고위험자산 금지)	제한 없음
중도인출 (환금성)	예외 조건 충족 시에만 가능 * 일부는 불가	가능(일부 또는 전체) *원금 제외 세액공제 받은 적립금이나 수익에는 기타소득세 부과
담보대출	불가능	가능



TDF와 TIF 비교 분석

TDF(Target Date Fund)		TIF(Target Income Fund)
자산 성장(자산축적기)	투자 목적	자산 보존 및 현금흐름 (자산소비기)
은퇴 10년 이상 이전	추천 시기	은퇴 직전~은퇴 이후
주식 및 채권 자동 조정	자산배분	채권·주식·인컴형 자산 중심
비교적 높음 (초기 주식비중 높음)	리스크	낮음 (변동성 최소화)
복리 성장 중심	수익 흐름	현금 흐름 중심
40대 직장인 : TDF 2050으로 운용	IRP 활용 예시	60대 은퇴자 : TIF+예금으로 운용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 3대 지원 정책

	부담경감크레딧	비즈플러스카드	배달·택배비
지원 연도	2025년 제1차 추경	2025년 제1차 추경	2025년도 본예산
지원 예산	1조 5660억원	1314억원	2037억원
규모	311.1만명	7000억원(7만명×1000만원)	67.9만명
매출	3억원 이하 ※ '24년 또는 '25년 연매출액 기준)	중·저신용자 ※ NICE 개인신용점수 595-839점 (4-7등급)	3억원 이하 ※ '23년 또는 '24년 연매출액 기준
운영형태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닌 소상공인 ※ 추경확정일('25.5.1) 이전 개업 소상공인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닌 소상공인	신청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닌 소상공인 ※ '24.12.31. 이전 개업 소상공인
제외 대상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	보증 제외업종 ※ 금융·보험업, 불건전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 배달·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
지원 금액	1인 50만원 한도	이용한도 1,000만원의 신용 카드 발급 지원	1인 최대 30만원
지원 방식	크레딧(디지털 포인트) 지원 전기, 가스, 상하수도, 4대 보험료	보증 및 신용카드 발급	과거 배달·택배 비용에 대한 보전



일 잘하는 사람들의 태도, 작은 습관 5가지

1. 작은 목표부터 시작하세요

인사와 리액션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기본 좋은 인사는 인간관계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아침 인사, 고맙다는 말, 미소 섞인 고개 끄덕임—이 작은 표현들이 직장 내 존재감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2. 일의 경중을 구분하세요

모든 일을 똑같이 처리하면 결국 중요한 일을 놓치기 쉽습니다. 시급한 일과 중요한 일을 구분하고, 때로는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걸러내는 판단력이 필요합니다.

3. 감정의 파도를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이 강자입니다

누구나 짜증나고 지치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그대로 표출하는 사람보다, 그것을 컨트롤할 줄 아는 사람이 신뢰를 얻습니다. 침착함은 리더십의 시작입니다.

4. '왜'라는 질문을 자주 던지세요

일을 시키는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이유를 생각해보는 습관이 일을 깊이 있게 만듭니다. 지시를 그대로 수행하는 것보다, 의미를 이해하고 움직일 줄 아는 사람이 더 빠르게 성장합니다.

5. 작은 성과에도 스스로를 격려하세요

칭찬은 꼭 타인에게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주는 이걸 잘 해냈어", "지난번보다 실수가 줄었어"—이런 자기 격려는 다음 행동의 연료가 됩니다. 자기 동기부여는 외부의 평가보다 오래 갑니다.

최신 판례 예규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2제1항에 따른 조세특례의 제한을 적용함에 있어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여러 차례 투자한 경우 "최초 보유일" 판단은 최초로 증권에 투자한 날을 기준으로 함

서면법규소득-5082, 2024.11.05

질 의

- 사실관계
- 거주자 甲은 상장리츠* 증권을 '21년 중 100주 매입하고, 직전 3개 과세기간('18 ~ '20년) 동안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7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라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 관련 증권 등에 투자·운영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인 주식회사임
- '22년 중 동일한 종목 100주를 추가로 매수하고 쟁점과세특례를 신청함. 단, '21년 금융소득은 2천만원을 초과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며, 누적적으로 투자한 금액의 합계액은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함

질의

- 쟁점과세특례 적용 배제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동법§129의2① 괄호안규정인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최초 보유일"의 의미

회 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555, 2024.10.23.)을 참조하시기 바랍.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555, 2024.10.23.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2제1항에 따른 조세특례의 제한을 적용함에 있어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같은 법 제87조의7의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여러 차례 투자한 경우 "최초 보유일" 판단은 최초로 증권에 투자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Marketing Tax consulting

국내상장 ETF와 해외상장ETF의 양도차손익은 통합합산할 수 없음

'25.1.1. 전에 배당소득으로 구분되는 국내상장 국내주식 ETF와 국내상장 해외주식 ETF의 양도로 발생한 이익과, 주식양도 소득으로 구분되는 해외상장 ETF에서 발생한 손실은 통산할 수 없는 것임

서면법규재산-5398, 2024.06.27

질 의

- 신청인은 국내상장 국내주식 ETF 및 국내상장 해외주식 ETF를 양도하여 수익이 발생하고, 해외상장 해외주식 ETF를 양도하여 손실이 발생

질의

- 국내상장 국내주식 ETF, 국내상장 해외주식 ETF의 손익과 해외상장 해외주식 ETF의 양도손실에 대하여 통산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신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21.2.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구분되는 국내주식의

가격을 기반으로 지수의 변화를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 상장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 및 국내상장 해외주식 추종 ETF를 양도하여 발생한 이익과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해외주식 추종 ETF를 양도하여 발생한 손실은 통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적분할에 따른 법인설립은 창업에 해당하지 않음

기준법규법인-91, 2024.07.30

■ 질 의

- 물적분할로 설립된 경우에도 창업한 것으로 보아 설립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단서 및 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않는지 여부

■ 회 신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적격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같은항 제4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이 피투자법인(피투자법인의 자회사 및 손회사 포함, 이하 같음)의 발행주식 총수의 1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으나, 해당 피투자법인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전법규국조-837, 2024.11.27

■ 질 의

- 질의법인이 A법인을 통하여 간접으로 1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이 질의법인과 국조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을 때,
 - 해당 외국법인이 국조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및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제출 대상인지 여부

■ 회 신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이 피투자법인(피투자법인의 자회사 및 손회사 포함, 이하 같음)의 발행주식 총수의 1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으나, 해당 피투자법인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국세청, 내달부터 '기업승계 세무컨설팅' 접수...명문장수기업·백년가게도 대상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7월 한 달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승계 세무컨설팅' 신청접수를 받는다.

신청대상은 기업승계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소규모 중소기업으로 직전 3개년 평균 수입금액 120억원 이하여야 한다. 동시에 대표이사가 5년 이상 계속 재직했거나, 기업승계 이후 사후관리가 진행 중인 경우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농·임·축산·어업, 법무·회계서비스업, 이·미용업, 목욕업, 세탁업, 카페, 음식점 등은 컨설팅 대상에서 제외된다.

미국 관세정책 등으로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기업(매출 50% 이상이 수출), 수출 중소기업 중 관세청·코트라가 선정한 세정지원대상 업체는 우대하여 컨설팅을 제공한다.

올해부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인증받은 명문장수기업 53곳, 3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백년가게 점포 1357개를 컨설팅 대상으로 포함했다.

기업승계 세무컨설팅은 현장방문·서류검토 등을 통해 대상기업이 세제혜택을 받기 위한 사전 준비사항 및 사후 준수요건 등을 진단하고 보완 사항을 안내하고, 기업상속 공제가능 여부·사후관리 위반 추정사유 등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 요청 시 4주 이내 검토 후 의견을 회신한다.

새로운 법 해석이 필요한 기업승계 관련 질의는 최우선 처리한다.

컨설팅 희망 기업은 신청기간 동안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선정 결과는 9월 1일까지 개별 통지한다.

국세청 "오늘(26일)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지급...계좌·현금 수령 가능"

2024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이 오늘(26일) 지급된다.

이번에 지급하는 근로·자녀장려금은 200만 가구, 1조 8345억원이며 2024년 12월 이미 지급한 상반기분 5789억원을 포함해 지난해 근로·자녀장려금은 총 212만 가구, 2조 4143억원으로 집계됐다.

근로장려금 반기 제도는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 간 차이를 줄여 근로소득자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소득지원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2019년 귀속부터 도입됐다.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가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월 정기 신청한 것으로 봐 8월 말 심사·지급한다.

장려금은 신청 시 선택한 지급 방법에 따라 계좌 또는 현금 지급된다. 계좌의 경우 26일 본인 계좌로 입금되고, 현금 지급의 경우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에서 수령할 수 있다.

장려금 상담센터는 이날부터 내달 11일까지 운영되며 105명의 상담사가 반기 지급 관련 신속하고 친절하게 상담하고 있다. '보이는 자동응답' 기능을 제공해 궁금한 사항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모든 국민이 함께 행복한 기본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복지 세정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관세청, 복잡했던 법규준수도 평가 '하나로' 통합...기업 부담 경감 기대

관세청이 수출입 기업의 법규준수 평가 제도를 통합해 2025년 4분기부터 새로운 기준의 법규준수도 평가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기존 제도의 복잡함으로 인한 기업의 혼란과 행정적 비효율을 해소하고, 기업의 자율적인 법규준수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관세청 관계자는 "그동안 관세청은 여러 종류의 법규준수도 평가 제도를 개별적으로 운영해왔다"면서 "이로 인해 기업들은 중복 평가를 받거나 제도별로 다른 평가 기준에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그간 관세청은 업종별 특성과 평가 목적을 반영해 '통합 법규준수도(전체)', '특송업체 법규준수도(특송업체)', '법규수행능력평가(물류업체)'를 각각 운영해 왔다.

그러나 동일 업종에 대한 중복 평가가 발생하면서, 제도별 평가 항목 및 산식이 상이해 평가점수가 다르게 나타나는 등 기업과 세관 모두에 혼란과 비효율을 초래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이처럼 기존의 복잡했던 여러 평가 제도를 하나의 통합된 기준으로 단일화하는 것이다.

소규모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고민, 국세청이 도와드려요

- 국세청, 2025. 6

- (제도개요)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중소기업인들의 세무부담을 해소하고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22년부터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가업승계 세제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과 장기간에 걸친 준비가 필요함에도, 경제적인 부담으로 외부전문가의 컨설팅을 받기 어려운 소규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집중 지원할 예정입니다.
 - (컨설팅 내용) 기업별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세제혜택 적용요건을 사전에 진단하여 보완할 사항을 안내하고, 법령해석이 필요한 질의는 최우선 처리합니다.
 - (가업승계 요건진단) 기업 현장방문 등을 통해 세제혜택을 받기 위한 사전 준비사항 및 사후 준수요건 등을 진단하고 보완 사항을 안내합니다.
 - (상시자문 서비스) 가업상속 공제가능 여부, 사후관리 위반 추정사유 등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 요청 시 4주 이내 검토 후 의견을 회신합니다.
 - (서면질의 신속처리)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가업승계 관련 질의는 최우선 처리하여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습니다.
- <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주요 사례 >

제조업 법인

가업승계 증여 특례

주식(59%) → 제3자 배정 유상증자 → 지분율 감소 (48.2%)

Q 지분율감소 → 사후관리 위반?
(59.0% → 48.2%)

A 증자후 최대주주 유지시 위반X

자녀에게 가업법인 주식(59%)을 증여하고 가업승계 과세특례 적용 이후 법인은 재무 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유상증자를 고려 중

⇒ 유상증자로 인해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하더라도 증자 후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추정 사유에서 제외됨 (컨설팅) 최대주주 지분율을 고려하여 유상증자 진행

□ (신청 요건) 가업승계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소규모 중소기업(직전 3개년 평균 수입 금액 120억 원 이하)으로서 ①대표이사가 5년 이상 계속 재직하였거나, ②가업승계 이후 사후관리가 진행 중인 경우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외업종 : 농·임·축산·어업, 법무·회계서비스업, 이·미용업, 목욕업, 세탁업, 카페, 음식점 등

○ 특히, 미국 관세정책 등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업체*와, 수출 중소기업 중 관세청·코트라가 선정한 세정지원대상 업체를 우대하고,

*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중소기업

○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인증받은 명문장수기업¹⁾과 함께, 올해부터는 3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면서 국가경제 발전에 오랫동안 기여한 백년가게²⁾를 컨설팅 대상으로 추가하여 선정할 예정입니다.

1) 해당 업종에서 45년 이상 일자리 창출, 수출 증대 등 경제발전에 기여한 기업 (53개)

2) 업력 30년 이상 유지하면서 우수성과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받은 점포 (1,357개)

|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선정기준 |

□ 직전 3년 평균 수입금액 120억 이하의 소규모 기업

○ (1순위) 국세청 세정지원 대상 수출 중소기업

○ (2순위) 중소벤처기업부 선정 명문장수기업, 백년가게 등 업력 30년 이상 장수기업

○ (3순위) 직전 사업연도 고용인원이 많은 기업

○ (4순위) 최근 5년 이내 조사모범 및 납세자의 날 수상한 모범납세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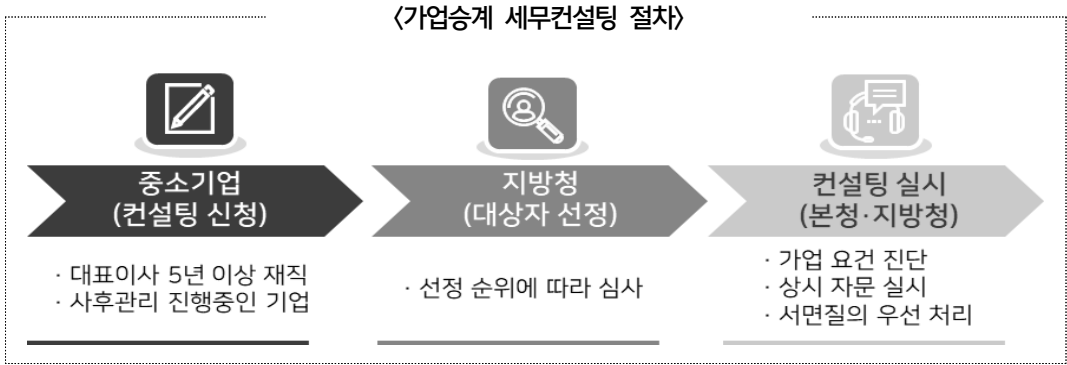
□ (신청 방법) 컨설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오는 7월부터 한 달간('25.7.1. ~ '25.7.31.)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홈택스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선정 결과는 '25.9.1.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입니다.

○ 한편, 이전에 신청하였으나 선정이 안 된 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이번 심사 대상에 포함하여 한 번 더 기회를 제공합니다.

□ (향후 계획) 앞으로도 국세청은 가업승계를 고민 중인 중소기업의 세무상 불확실성을 사전에 제거하고, 친절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기업이 세대를 이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참고 1 기업승계 세무컨설팅 주요 내용 및 신청방법

□ 컨설팅 진행절차



□ 컨설팅 주요내용

	<p>기업승계 사전·사후요건 진단</p> <p>지방청 대면상담, 기업 현장방문 등을 통해 기업승계 세제혜택을 받기 위한 사전 준비사항 및 사후 준수요건 등을 진단하고 보완사항을 안내</p>
	<p>상시 자문서비스 제공</p> <p>가업상속 공제가능여부, 사후관리 위반 추정사유 등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요청에 대하여 4주 이내 검토 후 의견 회신</p>
	<p>신속한 서면질의 답변</p> <p>기업승계 관련 법령해석이 필요한 경우 최우선 처리로 불확실성 조기 해소</p>

□ 신청대상 및 방법

- (신청대상) 소규모 중소기업(직전 3개년 평균 수입금액 120억원 이하)으로서
 - ① 대표이사가 5년 이상 계속 재직 중인 중소기업
 - ② 기업승계 이후 사후관리가 진행 중인 중소기업
- (신청기간) '25.7.1. ~ 7.31. (※ 대상자 선정 결과통지는 '25.9.1.까지 개별통지)
- (신청방법) 홈택스* 또는 기업 대표자 주소지 관할 지방국세청에 우편, 방문접수
 - 단, '22 ~ '24년 컨설팅 미선정 기업은 신규 신청 없이도 심사대상에 자동 포함
 - * 홈택스(www.hometax.go.kr) : 세금관련 신청/신고 > 공통분야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찾기'에 "기업승계 세무컨설팅" 입력 후 조회하기 > 인터넷 신청

참고 2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신청 안내문 내용

①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신청방법

■ 신청대상

소규모 중소기업(직전 3개년 평균 수입금액 120억원 이하)으로서

- 대표이사가 5년 이상 계속 재직 중인 중소기업의 대표
- 가업승계를 착수하려고 진행 중인 중소기업의 대표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 ▶ 2025. 7. 1.(화) ~ 2025. 7. 31(목)
- 신청방법 :
 - ▶ 신청서 등을 기업 대표자 주소지 관할 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에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홈택스를 통한 신청 가능

■ 제출서류

-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신청서」

■ 컨설팅 대상 선정

- 신청대상자 중 국세청 세정지원 대상인 수출 중소기업, 사업영위기간이 30년 이상인 장수기업 등에 대해 우선 선정순위를 부여하며, 서면심사 후 선정결과를 2025. 09. 01.(월)까지 알려드립니다.

②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의 주요 내용은?

■ 가업승계란?

□ 가업승계 지원제도는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에 과세특례가 있습니다.

- ① 가업상속공제 : 10년 이상 경영한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경영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공제해 주는 제도
- ② 가업승계 증여에 과세특례 : 경영자인 부모가 자녀에게 가업을 살아 생전에 증여하는 경우 10%(20%)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

■ 컨설팅 기간

□ 대상 선정일부터 1년간 가업승계 관련 세무컨설팅을 지원합니다.

■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지원 내용

- 컨설팅은 기업현장을 방문하거나 지방청 면담상담 또는 전화상담 등 기업들의 선택에 따라 탄력적으로 제공됩니다.
 - (요건 진단) 가업승계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이 가업승계 시 사전에 준비해야 할 내용과 사후에 지켜야 할 내용을 진단하고 보완사항을 안내합니다.
 - (상시자문) 가업승계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어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검토하여 4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합니다.
 - (신속한 서면답변) 가업승계와 관련하여 법령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 서면질의를 제출하면 최우선으로 처리합니다.

□ 가업승계 세정지원팀 (지방청 성실납세지원국 소득재산세과)

지방청	연락처
서울청	02-2114-2888
중부청	031-888-4462
대전청	042-615-2446
대구청	053-661-7443
광주청	062-236-7444
부산청	051-750-7416
인천청	032-718-6454
국세청	044-204-3444

우리 청에서는 중소·중견기업 경영자를 위한 가업승계 지원제도 안내 책자와 리플렛을 발간하여 국세청 누리집에 게재하고 있으며, 제도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국세정책 > 국세정책홍보자료 > 리플릿

※ 가업승계 지원제도 문의사항이 있을 시 국세상담센터(☎126)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참고 4 기업승계 세제혜택

□ 기업상속공제란?

-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을 상속하는 경우 경영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공제 해주는 제도입니다.

어떤 혜택이 있나요?

- 기업영위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기업영위기간	공제한도
10년 이상 20년 미만	300억
20년 이상 30년 미만	400억
30년 이상	600억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 피상속인(사전요건) 요건

- ① 최소 10년 이상 기업을 경영하며 대표이사로 재직
 - ② 기업의 지분을 40% (상장사 20%) 이상 보유
- * 개인기업, 법인기업 모두 가능

□ 상속인 요건

- ① 상속개시 전 2년 이상 가업종사
- ②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
- ③ 신고기한부터 2년이내 대표 취임

△ 다만 승계 후 5년간은 아래의 요건을 지켜야 합니다.

- 요건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공제받았던 상속세 이자까지 추징됩니다.

- ① 가업용 자산을 40% 이상 처분하면 안됩니다.
- ② 대표이사를 상속인이 아닌 자로 변경하면 안됩니다.
- ③ 상속인이 기업 주식 지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 ④ 5년간 정규직 근로자수 평균과 총급여액이 기준 고용인원(기준총급여액)*의 90%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의 평균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란?**

□ 경영자인 부모가 자녀에게 기업영위 법인의 주식을 낮은 세율로 증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어떤 혜택이 있나요?

□ 일반증여와 비교하여 공제액이 크고, 세율이 낮습니다.

구분	증여공제	세율
일반적인 증여	5천만원	10 ~ 50%
증여세 과세특례	최대 100억원	10 ~ 20%

□ 특례적용시 증여세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증여세 과세표준	증여세 과세특례 세율
(과세표준~10억) ≤ 120억	10%
(과세표준~10억) > 120억	120억 초과 20%
(과세가액 한도 : 600억)	120억 이하 10%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특례적용 가능합니다.

□ 증여자(부모) 요건

- ① 최소 10년 이상 기업을 경영
- ② 기업의 지분을 40% (상장사 20%) 이상 보유
* 개인기업은 적용 불가능합니다.
- ③ 가업영위기간의 50% 이상, 또는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동안 대표이사 재직

□ 수증자 요건

- ① 18세 이상 자녀,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기업에 종사
- ② 증여일로부터 3년이내 대표 취임

△ 다만 승계이후 5년간은 아래의 요건을 지켜야 합니다.

□ 요건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증여세율을 적용한 증여세에 이자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 ① 증여받은 주식의 지분을 유지해야 함
- ② 대표이사 등으로 종사하며 계속 기업을 경영해야 함.

금융소득종합과세 문답

- 국세청, 2025. 6

1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의의

[1-1]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란 무엇입니까?

- 금융소득종합과세란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을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누진세율)로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전체를 종합과세하는 것이나 종합과세 기준금액(2천만원)을 기점으로 한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문제를 보완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시 최소한 원천징수세율(14%) 이상의 세부담이 되도록 하기 위해 소득세법 제 62조에 의한 비교과세방법에 따라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 ☞ 기준금액 이하금액은 형식적으로 종합과세되나 원천징수세율에 의해 산출세액을 계산하므로 실질적으로는 분리과세 되는 것과 동일함
 - ☞ 비교과세 산출세액 계산은 [7-1], [7-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금융회사 등에서의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더라도 금융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국외금융소득과 같이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은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2] 금융소득이 있으면 모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까?

-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과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않는 금융소득이 있는 사람 등은 금융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 종합과세 되는 금융소득은 다음연도 5월말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022년 귀속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2023년 5월1일부터 5월31일(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30일)까지 소득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 연간 개인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금융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개인합산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금융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 ☞ 자세한 내용은 [5-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되는 납세의무자

[2-1]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되는 납세의무자는 누구입니까?

-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되는 납세의무자는 거주자인 개인과 개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입니다.(법인은 금융소득종합과세와 관련이 없습니다)
 - 법인 아닌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예 : 동창회, 친목회, 종종, 등록되지 않은 종교기관 등)

[2-2] 비거주자의 금융소득은 어떻게 과세됩니까?

- 비거주자의 금융소득은 해당 금융소득이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 및 부동산 임대소득과 관련이 있는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비거주자가 국내사업장이 없거나(국내사업장이 있으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경우 포함) 부동산임대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여도 소득세가 종합과세 되지 않습니다.

[2-3] 자녀의 금융소득도 부모의 금융소득에 합산됩니까?

-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는 개인별로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때 종합과세를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자녀의 금융소득은 부모의 금융소득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다만, 명의만 자녀명의로 된 경우는 실제 소유자에게 합산과세 됩니다.

[2-4] 공동사업을 하면서 사업과 관련된 주거래 통장에서 매월 이자소득이 발생하고 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자소득을 대표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신고 해야 하는지요?

-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 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은 공동사업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금액을 각 거주자의 금융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여 종합과세하는 경우)

3 금융소득의 범위

[3-1] 금융소득이란 무엇입니까?

○ 금융소득이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말합니다.

$$\text{금융소득} = \text{이자소득} + \text{배당소득}$$

[3-2] 이자소득이란 무엇입니까?

○ 이자소득이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소득을 말합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및 우편대체 포함)의 이자
4.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신용계(信用稜)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5.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6.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8.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9.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10.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02.1.1. 이후 최초 발생 소득부터 “유형별 포괄과세” 적용)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파생상품이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3-3] 배당소득이란 무엇입니까?

○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의 소득을 말합니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 2의2. 「법인세법」제5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법인과세신탁재



- 산”)으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擬制配當)
 4.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 5의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8.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9.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02.1.1. 이후 최초 발생 소득부터 “유형별 포괄과세” 적용)
 10.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파생상품이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3-4] 채권을 보유하여 지급받는 이자도 금융소득에 해당됩니까?

- 거주자가 국·공채나 회사채 등 채권을 보유하여 보유기간에 대해 지급받는 이자소득은 금융소득에 해당됩니다.

[3-5] 주식이나 채권의 매매차익도 금융소득에 해당됩니까?

- 거주자가 주식이나 채권 등 유가증권을 매매하여 취득하는 매매차익은 금융소득이 아니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나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3-6] 국외금융회사 등에 예금하거나 외국정부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매입하여지급 받는 이자도 금융소득에 해당됩니까?

- 국외에서 지급받는 이자도 금융소득에 해당되는 이자소득입니다.
 - ① 국외금융회사 등에 예금하여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와 투자신탁의 이익
 - ②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보유하여 지급받는 이자와 할인액
 - ※ 이자소득으로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받는 금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종합과세 됩니다.

[3-7]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하여 지급받는 배당도 금융소득에 해당됩니까?

-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하고 지급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은 금융소득에 해당됩니다.
- ※ 배당소득으로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받는 금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종합과세 됩니다.

[3-8] 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등을 예금하여 얻은 이자소득도 종합과세 됩니까?

-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임대보증금 등을 정기예금 등으로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고 지급받는 이자는 이자소득입니다.
- 해당 이자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되지 않고, 그 이자소득을 다른 이자·배당소득과 합산한 금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 됩니다.

[3-9] 금융소득금액은 실지로 지급받는 금액으로 합니까?

- 금융소득금액은 소득자가 실지로 지급받은 금액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금융소득 지급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공제하기 전의 이자·배당소득금액 총액을 말합니다.
- 예를 들어 이자소득 1,000만원에서 소득세 140만원(14%), 지방소득세 14만원(소득세의 10%)을 차감하고 846만원만 지급받더라도 이자소득은 1,000만원입니다.

[3-10] 금융소득 산출세액 계산시에 비용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까?

- 거주자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비용)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급받는 금액(수입금액) 자체가 이자 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이 됩니다.
- 즉, 금융소득이 발생한 금융자산(예금 등)이 금융회사 등에서 대출받은 차입금일 경우에 차입금에 대해 지급한 지급이자나 예금인출 등에 소요된 교통비 등 비용이 발생되어도 이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3-11] 비상장회사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로부터 배당금을 받았는데 종합과세배당소득인지요?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은 2천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입니다.

[3-1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국내 금융회사 등에 사업소득 외 재산을 예치하고 있는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여부는?

- 국내사업장 및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와 국내에서 취득한 광업권, 조광권,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어업권, 토사석채취에 관한 권리의 양도임대 기타 운영



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없는 비거주자가 수취하는 이자·배당소득은 각각 분리하여 과세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이때의 이자·배당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3-13] 외국의 증권시장에 상장된 외국법인의 주주가 금전배당을 받으면서 국내에서 지급 대리인에 의하여 원천징수 된 경우에 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요?

- 국외금융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원천징수 된 경우에는 다른 이자·배당소득과 합산한 금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종합과세 됩니다.

[3-14]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출자만 한 공동사업(이하 “출자공동사업”이라함)에서 분배 받은 소득은 다른 사업소득과 소득세 신고방법이 어떻게 다른가요?

- 출자공동사업에서 분배받은 소득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되며, 다른 금융소득과 달리 분배 받은 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반드시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또한, 출자공동사업에서 분배받은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25%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며,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원) 초과여부 판단 및 배당가산(Gross-up)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출자공동사업에서 분배받은 배당소득 비교과세방법은 [7-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15]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출자만 한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소득(이하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소득”이라 함)과 출자공동사업에서 분배받은 소득의 소득세 신고방법에 차이가 있나요?

-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소득도 출자공동사업에서 분배받은 소득과 같이 배당소득으로 분류되며, 배당가산(Gross-up)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만, 출자공동사업에서 배분받은 소득은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금융소득에 대해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나,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배당소득은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소득세 확정신고를 합니다.

4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인한 세부담

[4-1] 금융소득종합과세로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이 종전보다 늘어납니까?

- 금융소득종합과세에도 불구하고 일부 고액 금융소득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민들은 세금이 크게 줄었습니다.

- 이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시행과 함께 원천징수세율이 연차적으로 인하되어 금융회사 등에서 원천징수하는 세금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연 도 별	1999년	2000년	2001년	2005년이후
원천징수세율 (지방소득세율)	22.0% (2.2%)	20.0% (2%)	15.0% (1.5%)	14% (1.4%)

- ※ 예를 들면 이자소득이 1,000만원인 경우에
- 1999년에는 세금 242만원을 납부하고 758만원을 수령
 - 2001년 이후에는 세금 165만원 납부, 835만원 수령
 - 2005년 이후에는 세금 154만원 납부, 846만원 수령

[4-2]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인하여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사람도 세금이 늘어납니까?

- 금융소득종합과세 시행과 함께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대부분의 사람은 신고 등 추가적 불편 없이 세금부담은 크게 줄었습니다.
 -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사람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종합과세 이전과 동일하게 금융회사 등의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분리과세)
 - 원천징수세율 인하로 금융회사 등에서 원천징수하는 세금이 크게 줄었습니다.
 - ☞ 자세한 내용은 [4-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3] 장기채권 등에 대하여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종합과세 하는 것보다 세금부담이 줄어드나요?

-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이자소득이 30%(지방소득세 포함 33%)로 원천징수되어, 분리과세를선택하지 않은 경우인 14%(지방소득세 포함 15.4%)의 원천징수에 비하여 세부담이 2배로 늘어납니다.
- 세법개정으로 2018.1.1. 이후 발행하는 장기보유채권에 대한 이자소득 분리과세(30%) 제도가 폐지되어 해당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다른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 대상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5 종합과세 되는 금융소득금액의 계산

[5-1] 모든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되는 금융소득입니까?(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융소득은 무엇입니까?)

-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은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 그러나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금융소득과 분리과세 되는 금융소득은 해당 금융소득의 크기에 불구하고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2]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종합과세 되는 금융소득이 있습니까?

-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않은 금융소득과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의 크기와 관계없이 계속하여 종합과세 됩니다.
 - 2천만원은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과세하고,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기본세율(6%-45%)로 종합과세 합니다.

[5-3]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액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않은 금융소득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에서 종합과세대상이 아닌 비과세 및 분리과세 금융소득을 제외한 금융소득의 합계액으로 2천만원 초과여부를 계산합니다.

[5-4] 종합과세 되는 금융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 거주자의 종합과세대상이 되는 금융소득은 이자·배당소득을 연도별로 합산하여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전체가 종합과세 됩니다.

[5-5]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않은 금융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입니까?

- 이자·배당 중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않은 것은 모두 종합과세 되는 금융소득입니다.
 - 다만, 해당 금융소득이 국내 금융회사 등에서 원천징수 된 경우에는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과세 됩니다.

[5-6]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금융소득도 종합과세 됩니까?

-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은 모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7] 세금우대저축의 이자·배당소득도 종합과세 대상입니까?

- 금융회사 등에서 원천징수세율이 14% 보다 낮은 세율인 9%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세금우대저축의 이자·배당소득은 분리과세 되는 금융소득으로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8] 예금·적금이자 보다 대출에 따른 이자비용이 더 많은데 원천징수세액이 환급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별도의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매관련 소송비용, 대여금 관련 차입금의 이자, 대여금 알선사례비 등이 이자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5-9] 금융소득 2천만원까지는 종합과세 신고대상이 아닌 걸로 하는데 이때 2천만원은 세전 이자소득인지 아니면 세후 이자소득인가요?

- 종합과세 신고대상 소득여부 판단은 세전 이자소득으로 하는 것이며, 이때 2천만원 이하인 경우라도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않는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5-10] 금융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 원천징수세율(14%)을 적용받는 이자·배당소득을 제외한 기본세율(6~42%)이 적용되는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기부금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6 금융소득의 수입시기

[6-1] 어떠한 기준으로 연도별 금융소득을 계산합니까?

- 금융소득은 연도별로 개인 금융소득을 파악한 후에 종합과세 되는 금융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 금융소득이 귀속되는 연도(귀속연도)는 해당 금융소득의 수입시기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이자 등을 실지로 지급받지 않아도 수입시기가 도래하면 금융소득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수입시기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 금융소득 종류별 수입시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장과 제3장의 본문 중 수입시기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2] 비상장법인의 주주총회 잉여금처분 결의일(기명주식)이 2022.3.10.인 경우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까?

- 배당소득의 경우 잉여금처분 결의일이 수입시기이므로 2021사업연도에 대한 배당이 2022.3.10.에 잉여금처분 결의된 경우에는 2022년 귀속 배당소득이 되므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일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2023년 5월31일(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6월30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것입니다.

[6-3] 2019.1.15.부터 3년간 납입한 정기에금이 2022.1.15.에 만기가 되어 원금과 만기 이자를 수령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정기에금은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은 날을 수입시기로 하므로 2022년에 만기가 되어 이자를 수령한 경우에는 2022년 귀속 이자소득이므로 2023년 5월31일(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는 6월30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것입니다.



7 금융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계산

[7-1] 금융소득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되는 경우에 산출세액은 비교과세방법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 비교과세란 금융소득을 종합과세 할 경우의 소득세가 원천징수하는 경우의 소득세보다 적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 금융소득을 종합과세할 때의 산출세액과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지 않는다고 가정할 경우의 원천징수세액을 서로 비교하여 큰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 비교과세에 의한 산출세액 계산 시 출자공동사업자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이 아닌 다른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비교과세방법>

다음 ①과 ②중 큰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으로 합니다.

- ① 금융소득을 기본세율로 과세 시 산출세액(㉠+㉡)
 - ㉠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과 금융소득 이외의 종합소득에 대해 종합소득공제 후 기본세율(6-45%)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
 - ㉡ 2천만원 이하 금융소득에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
 - ② 금융소득을 원천징수세율로 과세 시 산출세액(㉢+㉣)
 - ㉢ 금융소득 전체에 14%(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5%)의 세율을 적용한 소득세
 - ㉣ 금융소득 이외의 종합소득에 대해 종합소득공제 후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
- * 다만, ㉣의 세액이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하여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과 금융소득 및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배당소득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을 합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종합소득 비교세액으로 한다.

[7-2] 금융소득종합과세 비교과세 사례

[사례 1] 2천만원을 초과하는 이자소득이 있는 경우(14% 이자소득만 있음)

<p>(1) 2022년도 종합소득현황</p> <p>① 은행예금 이자 : 50,000,000원</p> <p>② 회사채 이자 : 50,000,000원</p> <p>③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이자 : 5,000,000원</p> <p>(2) 종합소득공제는 5,100,000원</p>
--

(계산내역)

- (1) 종합과세 되는 금융소득금액

- ①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금액 : 1억원(은행예금이자 및 회사채이자)
 ☞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이자는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으로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 금액에서 제외됨
- ② 기준금액초과 금융소득 : $100,000,000 - 20,000,000 = 80,000,000$ 원

(2)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계산

- ① 금융소득을 기본세율로 과세 시 산출세액
 $(2\text{천만원 초과금액} - \text{종합소득공제}) \times \text{기본세율} + 2\text{천만원} \times 14\%$
 $= (80,000,000 - 5,100,000) \times \text{기본세율} - \text{누진공제} + (20,000,000 \times 14\%)$
 $= (74,900,000 \times 24\% - 5,220,000) + 2,800,000$
 $= 12,756,000 + 2,800,000 = 15,556,000$ 원
- ② 금융소득을 원천징수세율로 과세 시 산출세액
 $\text{금융소득} \times 14\% = 100,000,000 \times 14\% = 14,000,000$ 원
- ③ 종합소득산출세액은 ① 과 ② 중 큰 금액인 15,556,000원

【사례 2】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1) 2022년도 종합소득현황

- ① 은행예금 이자 : 10,000,000원
- ② 비영업대금이익 : 30,000,000원
- ③ 비상장법인 배당 : 30,000,000원
- ④ 상장법인 배당 : 20,000,000원

(2) 종합소득공제는 5,100,000원

(계산내역)

- (1) 종합과세 되는 금융소득금액
 - ① 종합과세 되는 금융소득 : 90,000,000원
 - ② 기준금액초과 금융소득
 $90,000,000 - 20,000,000 = 70,000,000$ 원
 - Gross-up 금액 = $50,000,000 \times 11\% = 5,500,000$ 원
 -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 : $70,000,000 + 5,500,000 = 75,500,000$ 원
- (2)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계산
 - ① 금융소득을 기본세율로 과세 시 산출세액
 $(\text{종합과세금액} + \text{Gross-up금액} - \text{종합소득공제}) \times \text{기본세율} - \text{누진공제액} + (2\text{천만}$

$$\begin{aligned} & \text{원} \times 14\% \\ & = \{(70,000,000 + 5,500,000 - 5,100,000) \times 24\% - 5,220,000\} + 20,000,000 \\ & \times 14\% \\ & = 11,676,000 + 2,800,000 = 14,476,000\text{원} \end{aligned}$$

- ② 금융소득을 원천징수세율로 과세 시 산출세액
(비영업대금이익 × 25%) + { (그외 금융소득금액 × 14%)
= (30,000,000 × 25%) + { (60,000,000 × 14%) = 15,900,000원
- ③ 종합소득산출세액은 ① 과 ② 중 큰 금액인 15,900,000원

[사례 3] 이자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1) 2022년도 종합소득현황
 ① 은행예금 이자 : 60,000,000원
 ② 사업소득금액 : 30,000,000원
 (2) 종합소득공제는 5,100,000원으로 가정

(계산내역)

- (1) 종합과세 되는 금융소득금액
 - ① 종합과세 되는 금융소득 : 60,000,000원
- (2)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계산
 - ① 금융소득을 기본세율로 과세 시 산출세액
(2천만원 초과금액+사업소득금액-종합소득공제)×기본세율+2천만원×14%
= (40,000,000 + 30,000,000 - 5,100,000) × 기본세율 + 20,000,000 × 14%
= (64,900,000 × 24% - 5,220,000) + 2,800,000 = 13,156,000원
 - ② 금융소득을 원천징수세율로 과세 시 산출세액
금융소득금액 × 14% +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기본세율
= 60,000,000 × 14% + (30,000,000 - 5,100,000) × 기본세율
= 8,400,000 + (24,900,000 × 15% - 1,080,000) = 11,055,000원
 - ③ 종합소득산출세액은 ① 과 ② 중 큰 금액인 13,156,000원

[7-3]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는 국외금융소득이 370만원 있고, 타소득이 1,000만원 있는 경우 산출세액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요?(소득공제 210만원)

◦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을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① [1,000만원 - 210만원(소득공제)] × 6% = 474,000원
- ② 370만원 × 14% = 518,000원

①과 ②의 합계금액인 992,000원이 산출세액입니다.

[7-4] 사업 소득과 이자소득이 있고, 사업소득금액에서 결손금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자소득에서도 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요?

- 사업소득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이자소득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세율(14%)을 적용받는 부분은 결손금 및 이월 결손금의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나, 종합소득세율(누진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부분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그 소득금액 범위 안에서 공제여부 및 공제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8 배당세액공제

[8-1] 배당세액공제는 무엇인가요?

- 법인단계에서 이미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을 주주에게 배당할 때 그 배당소득에 대하여 다시 과세하면 동일한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법인세 과세분인 배당가산액(Gross-up 금액)을 배당소득금액에 가산하였다가 다시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데 이를 “배당세액공제”라 합니다.
- 다만, 배당세액공제 시 배당가산(Gross-up)에 의해 산출된 세액이 최소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 이상이 되도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배당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 ☞ 2011~2022귀속 배당가산 시 적용되는 배당가산율은 11/100입니다.
(2009.1.1.~2010.12.31. 기간은 12/100)

[8-2] 모든 배당소득에 대해 배당세액공제가 적용되나요?

- 배당세액공제는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법인단계에서 이미 법인세가 과세된 배당소득에 대해서만 배당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다음의 배당소득은 배당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①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이익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 ② 토지의 재평가차액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 ③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준비금·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을 함에 따라 해당 법인 외의 주주 등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 등의 가액에 의한 의제배당
 - ④ 「조세특례제한법」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법인세의 비과세·면제·감면 또는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외의 법률에 의한 비과세·면제·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포함한다)를 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배당소득금액에 아래 산식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text{비율} = \frac{\text{직전 2개 사업연도의 감면대상소득금액의 합계액} \times \text{감면비율}}{\text{직전 2개 사업연도의 총소득금액의 합계액}}$$

※ 「법인세법」 제51조의 2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16을 적용받는 법인은 100분의100으로 하며, 비율은 100%를 한도로 한다.

[8-3] 배당세액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배당세액공제 시 배당가산에 의해 산출된 세액이 최소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세액 이상이 되도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배당세액공제를 적용하며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당세액공제액 : 아래 ①, ② 중 작은 금액
 - ① 배당가산액(Grosss-up 금액)
 - ② 종합소득산출세액 - 분리과세방법에 의한 산출세액

[8-4] 배당가산이 적용되는 배당소득과 적용되지 않는 배당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배당세액공제대상 배당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금융소득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원)은 납세자에게 유리하도록 아래 순서에 따라 합산합니다.
 - ① 이자소득부터 합산
 - ② 배당가산(Grosss-up)이 적용되지 않는 배당소득을 합산
 - ③ 배당가산(Grosss-up)이 적용되는 배당소득을 합산
- ☞ 자세한 내용은 [7-2] 계산사례 참조

9 신고·납부

[9-1] 종합과세 되는 금융소득이 있는 사람은 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합니까?

-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거나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않는 금융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연도 5월(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2022년 금융소득은 2023년 5월 31일(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금융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9-2] 금융소득이 부부에게 모두 있는 경우는 부부 중 누가 신고합니까?

-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하는 금융소득은 부부 각자 개인별로 금융소득 이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9-3] 봉급생활자인데 비상장법인의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까?

-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0 금융소득명세서 제공

[10-1]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는데 금융소득내역을 세무서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금융회사 등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금융소득지급명세서를 기초로 하여 매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중에만 금융소득명세서를 제공합니다. 올해의 경우 2023.5.1.~2023.5.31.(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30까지)기간 중 제공합니다.
 - 금융소득명세서는 홈택스(www.hometax.go.kr)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조회 : 금융소득자 본인이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금융소득]를 통해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공동(간편)인증서로 로그인한 경우만 가능)
 - 서면요청 : 금융소득자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금융소득명세서 제공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금융소득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법정대리인(부모 등)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 소득자의 위임장(인감증명서를 첨부)과 대리인 신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10-2]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세무서에 금융소득명세서 제공을 요청할 수 있나요?

- 세무서에서의 금융소득명세서 제공은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중에만 제공하는 것이므로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거나 확정신고 기간 외의 기간에는 거래하는 금융회사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10-3] 세무서에서 제공 받은 금융소득명세서와 금융회사 등에서 제공 받은 자료가 다른 데 어떤 자료를 기준으로 신고해야 하나?

- 금융회사 등에서 금융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중복제출, 오류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금융소득명세서 내용이 사실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금융회사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며, 누락된 자료는 해당 금융회사 등에서 개별적으로 수집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10-4] 세무서에서 제공받은 금융소득명세서를 금융회사 등 다른 기관에 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서류로 제출이 가능하니까?

- 세무서에서 제공하는 금융소득명세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명세서일 뿐 금융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서류가 아니므로 금융회사 등 다른 기관에 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서류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통 화 명	6월 20일 (금)	6월 23일 (월)	6월 24일 (화)	6월 25일 (수)	6월 26일 (목)
미 달 러 (USD)	1379.60	1369.40	1381.90	1365.000	1360.90
일 본 엔 (JPY)	948.60	935.54	947.16	941.90	938.20
영 국 파 운 드 (GBP)	1858.46	1838.35	1871.02	1858.38	1861.10
캐 나 다 달 러 (CAD)	1007.12	996.00	1006.34	994.46	992.02
홍 콩 달 러 (HKD)	175.75	174.46	176.05	173.89	173.38
위 안 화 (CNH)	191.86	190.76	192.32	190.31	190.07
유 로 화 (EUR)	1586.75	1573.17	1602.66	1584.77	1588.17
호 주 달 러 (AUD)	894.46	881.96	894.57	886.02	887.03
싱 가 폴 달 러 (SGD)	1072.70	1062.54	1076.96	1066.36	1064.95
말 레 이 시 아 링 기 트 (MYR)	323.85	322.02	321.75	321.63	321.08

수입물품 과세자료 제출 간소화

- 국세청, 2025. 6

- 관세청은 납세자의 가격신고 과세자료 제출 간소화를 위한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개편안을 5월 26일 행정예고 하였다.
- 이번 개정은 수입신고 시 불필요한 과세자료 제출을 최소화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관세청 역시 필수 과세 자료를 확보하여 신고 오류를 신속히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 이번 개정으로 도입되는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는 기존의 ‘모든 수입 기업의, 모든 수입 건에 대한, 방대한 과세자료 제출 의무’를 수입 거래 관련 8개 분야 해당 기업만, 연 최초 1회, 분야별 최소 1개의 과세자료만 제출하도록 대폭 간소화한 것이다.

❶ 주기적으로 과세가격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는 납세협력 프로그램기업*(AEO, ACVA)과 전년도 납세실적**이 5억 원 미만인 소규모 수입기업에 대해 과세자료 제출을 생략하여 납세자 신고 편의를 확대한다.

* AEO: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ACVA: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로그인 ⇨ 정보조회 ⇨ 자사실적 ⇨ 수출수입환급납세실적 ⇨ 실적조회 (전년도 1월~12월)

❷ 동일 판매자와 구매자 간 같은 조건*으로 반복 수입하는 경우, 매년 최초 신고 건에만 과세자료를 제출하고, 이후 신고 건은 자료가 제출된 최초 수입신고번호만 기재하도록 한다.

* 다른 품목이라도, 동일 과세자료(계약서, 내역서 등)로 입증되는 경우 ‘같은 조건’으로 간주

❸ 가격신고 내용의 확인이 필요한 특수관계자 거래, 권리사용료, 수수료 등 8개 분야*에 대해 과세자료 제출 기준을 ‘분야별 1개 이상’으로 명시하고, 수입 거래가 8개 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과세자료 미제출 사유서’로 자료 제출을 갈음하여 자료 제출 부담을 최소화한다.

* ①권리사용료, ②생산지원, ③수수료, ④운임·보험료, ⑤용기·포장비용, ⑥사후귀속이익, ⑦간접지급금액, ⑧특수관계자 거래



- ④ 과세자료 준비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과세자료 지연제출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허용하여 신속 통관에 지장이 없게 한다.
 - 관세청은 가격신고와 과세자료 제출을 성실히 수행한 기업에 대해서는 세액심사 및 관세조사 선정에서 제외하고, 꼭 필요한 경우라면 간이한 방법으로 사후납세심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 한편, 제출 대상 기업이 가격신고 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사후 제출요구에도 응하지 않는 경우, 월별납부업체 승인 취소, 관세조사 우선 선정 고려 등 제도 집행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개편안에 포함되어 있다.

- 관세청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내달 16일까지 접수받아 최종 검토한 후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다만,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는 과세자료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여 두 달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9월 1일 수입신고 분부터 적용된다.

- 관세청 손성수 심사국장은 “이번 가격신고 제도 개편으로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신고 오류를 최대한 조기에 치유하여 예상치 못한 고액 추징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24 회계연도 상장법인 재무제표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분석 및 유의사항 안내

- 금융감독원, 2025. 6

- 주 요 내 용 -

◆ (재무제표 감사의견) '24 회계연도 상장법인의 재무제표 감사의견'적정'비율은 97.5%(2,615사)로 전기와 유사(97.5%, 2,537사)한 수준입니다.

- √ 재무제표 감사의견이 '적정'인 기업 중 감사인이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이 있다고 명시한 경우는 3.2%(84사)입니다.
- √ '비적정' 감사의견의 주요 원인은 계속기업 불확실성 및 기초 재무제표 잔액, 종속·관계기업투자에 대한 감사범위 제한 등입니다.

◆ (내부회계 감사의견) '24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적정'비율은 98.0%(1,582사)로 전기(97.3%, 1,544사)보다 다소 개선되었습니다.

- √ 내부회계 감독강화와 기업의 개선노력 등에 따라 내부회계 감사대상이 증가하였음에도 비적정 기업수는 감소(43사 → 33사, 23.3%↓)하였습니다.
- √ 내부회계 감사의견의 '비적정' 주요 사유는 금융상품 손상·평가, 종속·관계기업 손상 등 회계처리 관련 내부통제 미비입니다.

[유의사항 안내]

- ☐ (회사) '25년부터 의무 시행되는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을 충실히 준수하여 외부감사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규모가 작은 회사일수록 회계투명성 제고에 각별한 관심이 요구됩니다.

- ☑ (외부감사인) 회사가 내부회계의 중요한 취약점을 기재했는지 확인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내부회계 감사보고서에 이러한 사실을 기재해야 합니다.
- ☑ (정보이용자)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이더라도 계속기업 불확실성의 기재여부와 내부회계 감사의견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I 재무제표 감사의견

- ◆ '24 회계연도 재무제표 감사의견이 '적정'인 상장법인은 분석 대상(2,681사)의 97.5%(2,615사)로 전기(97.5%, 2,537사)와 유사한 수준
- ◆ '비적정' 의견(66사)은 주로 '계속기업 불확실성', '기초 재무제표 잔액', '종속·관계 기업투자' 등과 관련된 이슈로 발생

1 재무제표 감사 적정 의견

□ (개황) 재무제표 감사의견이 '적정'인 상장법인은 분석 대상(2,681사*1)의 97.5%(2,615사)로 新 외감법 시행 이후 큰 변동 없이 97% 수준 유지*2

*1 '24년 중 결산일이 도래하는 상장법인 중 외국기업 등을 제외

*2 적정의견비중 (%) : ('19) 97.2 → ('20) 97.0 → ('21) 97.2 → ('22) 97.9 → ('23) 97.5 → ('24) 97.5

- (시장별) 유가증권(98.0%), 코스닥(97.7%), 코넥스(92.5%) 順
- (규모별) 기업 자산규모에 비례하여 2조원 이상이 100%로 가장 높고, 1천억원 미만이 95.4%로 가장 낮음

'24년 재무제표 감사의견 적정 상장법인 현황 (단위 : 사, %)								
구 분	시장별			규모별('24년말 자산기준)				합 계
	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	1천억원 미만	1천억원~5천억원	5천억원~2조원	2조원 이상	
전 체	816	1,745	120	1,035	1,069	375	202	2,681
적정 의견	800	1,704	111	987	1,052	374	202	2,615
(비 중)	(98.0)	(97.7)	(92.5)	(95.4)	(98.4)	(99.7)	(100.0)	(97.5)

- (계속기업 불확실성) 적정의견 기업 중 감사인이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을 기재한 상장법인은 84사(3.2%)로 전기(98사) 대비 14사 감소
 - * 재무제표가 적절히 작성되었으나, 계속기업에 대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경우 감사인은 적정의견을 표명하면서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에 대해 별도 기재
- '23년 재무제표 감사의견은 '적정'이나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기재한 상장법인(98사)의 23.5%(23사)가 차기에 상장폐지 또는 비적정의견을 받았으며, 이는 미기재기업(2.2%)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으로,
 - 정보이용자는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 정보에 유의할 필요

2 | 재무제표 감사 비적정의견

- 재무제표 감사의견이 '비적정'인 상장법인은 분석대상(2,681사)의 2.5% (66사)로 전기(2.5%, 65사)와 유사한 수준
- (의견별) '의견거절'은 58사로 전기(57사) 대비 1사 증가, '한정의견'은 8사로 전기(8사)와 동일
 - '24년 재무제표 감사의견 비적정 상장법인(66사) 중 34사(51.5%)는 '23년 감사의견도 비적정으로, 2년 연속 비적정에 해당

'24년 재무제표 감사의견 비적정 상장법인 현황 (단위 : 사, %)									
구 분	'24년(A)	'23년(B)			증 감 (A-B)				
		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					
전 체	2,681	816	1,745	120	2,602	808	1,669	125	+79
의견거절	58	13	36	9	57	12	40	5	+1
한 정	8	3	5	-	8	3	5	-	-
비적정의견 계	66	16	41	9	65	15	45	5	+1
(비 중)	(2.5)	(2.0)	(2.3)	(7.5)	(2.5)	(1.9)	(2.7)	(4.0)	-

- (시장별) 유가증권 시장의 상장법인 중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기업은 16사(비중 2.0%)로, 전기(15사, 비중 1.9%) 대비 1개사 증가
 - 코넥스 시장의 비적정 감사의견 기업수(9사, 비중 7.5%)도 전기(5사, 비중 4.0%) 대비 4개사가 증가(3.5%p↑)한 반면
 - 코스닥 시장의 상장법인(41사, 비중 2.3%)은 비적정 감사의견 기업수가 전기(45사, 비중 2.7%) 대비 4개사가 감소(0.4%p↓)
- (사유별) 비적정 감사의견은 계속기업 불확실성, 기초재무제표 잔액*, 종속·관계기업투자자에 대한 감사범위 제한 등이 주요 사유

* '23년 재무제표 감사의견이 비적정으로 '23년 기말 잔액에 대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하여 '24년 기초 잔액에 대한 감사범위가 제한된 경우 등

II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 ◆ '24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이하 '내부회계') 감사의견이 '적정'인 상장법인 비율은 분석 대상(1,615사)의 98.0%(1,582사)로 전기(97.3%, 1,544사)보다 다소 개선
- ◆ 내부회계 '비적정' 상장법인은 33사이며, 내부회계 감독 강화와 기업의 개선 노력 등에 따라 전기(43사) 대비 10사 감소(23.3%↓)

1 내부회계 감사 적정 의견

- 내부회계 감사의견이 '적정'인 상장법인은 분석 대상(1,615사)*의 98.0% (1,582사)로 전기(97.3%) 대비 다소 개선(0.7%p ↑)
 - * 상장법인 내부회계 감사대상 :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회사 중 종업원 수 6인 미만 회사 등 제외
 - (시장별) 코넥스는 100%, 유가증권 및 코스닥은 약 98% 수준
 - (규모별) 기업 자산규모에 비례하여 2조원 이상의 적정 비중이 100%로 가장 높고, 5천억원 미만은 97.1% 수준
 - 특히, '24년 중 자산규모 축소로 '24년말 자산이 1천억원 미만으로 감소된 회사의 내부회계 감사의견 적정비율은 81.6%로 가장 낮음
 - (연결 내부회계) 대상 기업 186사는 별도·연결 모두 내부회계 적정의견

'24년 내부회계 감사의견 적정 상장법인 현황 (단위 : 사, %)							
구 분	시장별			규모별('24년말 자산기준)			합 계
	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	~ 5천억원	5천억원 ~ 2조원	2조원 이상	
전 체	751	859	5	1,043	370	202	1,615
적정의견	735	842	5	1,013	367	202	1,582
(비 중)	(97.9)	(98.0)	(100.0)	(97.1)	(99.2)	(100.0)	(98.0)

2 | 내부회계 감사 비적정 의견

- '24년에 내부회계 감사대상이 증가('23년 1,587사 → '24년 1,615사)하였음에도, 내부회계 감사의견이 비적정인 기업은 전기 대비 10사 감소(43사→33사)
 - 이는 내부회계 감독강화*와 기업의 개선 노력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 *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 규정화, 내부회계 감리대상 확대('25년 : 1천억원 이상 개별·별도 및 2조원 이상 연결), 내부회계 관련 유의사항 안내 등
 - '의견 거절(감사범위제한)'은 22사로 전기(26사) 대비 4사 감소, '부적정(중요한 취약점有)'은 11사로 전기(17사) 대비 6사 감소
 - 내부회계 감사의 비적정의견은 금융상품 손상·평가, 종속·관계기업 손상 등 회계처리 관련 내부통제 미비가 주요 사유에 해당

'24년 내부회계 감사의견 비적정 상장법인 현황						(단위 : 사, %)	
구 분	'24년(A)				'23년(B)	증 감(A-B)	
		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		회사수	비율
의견거절	22	10	12	-	26	△4	△15.4
부 적 정	11	6	5	-	17	△6	△35.3
합 계	33	16	17	-	43	△10	△23.3

3 | 내부회계 감사의견과 재무제표 감사의견 비교

- '24년 내부회계 감사의견이 비적정인 기업 33사 중 23사(69.7%)는 재무제표 감사의견도 비적정으로, 양 의견 간 상관관계가 높은 수준
 - 내부회계 감사의견이 비적정인 10사(부적정 8사, 의견거절 2사)의 경우재무제표 감사의견은 적정의견*이 표명됨
 - * 내부회계의 중요한 취약점 등으로 인해 내부회계 감사의견이 비적정이라도 재무제표 감사과정에서 오류사항이 적절히 수정·반영되었다면 재무제표는 적정의견이 가능
 - 다만, 내부회계 감사의견 비적정사유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향후 내부회계 비적정 의견이 반복되거나 재무제표가 왜곡표시 될 우려가 있으므로
 - 회사는 내부회계의 중요한 취약점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필요

'24년 내부회계 비적정 상장법인의 재무제표 감사 의견 (단위 : 사)					
내부회계 감사의견		재무제표 감사의견			적정
		비적정	의견거절	한정	
내부회계 의견거절	22	20	20	-	2
내부회계 부적정	11	3	2	1	8
합 계	33	23	22	1	10

Ⅲ 유의사항 안내

【회사 유의사항】

①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회계투명성 제고에 각별한 관심이 요구됩니다.

- 경영진은 재무제표의 신뢰성 확보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실효성있는 운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
 - 특히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내부통제 수준이 미흡한 경우가 많아 적정의견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경영진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

② 올해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이 의무적용됩니다.

- 상장회사협의회의 자율규정으로 운영되던 내부회계 평가 및 보고에 관한 지침을 외부 감사규정*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으로 규정화('23년)
 -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4항 및 시행세칙 제3조의 2 별표6
 - '25사업연도부터 의무적용되는 동 규정을 충실히 준수하여 외부감사와 관련된 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

③ 올해부터 '자금 부정 통제'공시가 의무화되었습니다.

- '25사업연도부터 상장회사와 대형비상장회사는 운영실태보고서에 횡령 등 자금부정을 예방·적발하기 위한 통제활동과 실태점검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시*(자산 1천억 원 미만 상장회사와 대형 비상장회사 중 비금융회사는 '26사업연도부터 시행)
 - * 보도자료 참고('24.11.11, “‘횡령 등 자금 부정을 예방·적발하기 위한 통제 활동’을 충실·명료하게 공시하도록 세부 작성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외부감사인 유의사항】

① 회사가 중요한 취약점을 적절히 기재하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경영진과 감사기구(내부회계)의 중요한 취약점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련 취약점과 시정조치 계획을 기재해야 하는 바,
 - 외부감사인은 중요한 취약점이 운영실태보고서에 적절하게 포함되지 않았다면, 내부회계 감사보고서에 이러한 사실 등을 기재

【정보이용자 유의사항】

① 감사보고서에 계속기업 불확실성 기재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감사의견은 적정이어도 외부감사인이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이 있다고 기재한 경우, 향후 비적정의견을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 유의
 - ※ '23년에 재무제표 감사의견은 '적정'이었으나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기재된 상장사(98사)의 23.5%(23사)가 이후 상장폐지 또는 비적정의견을 받음

② 재무제표뿐만 아니라, 내부회계 감사의견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 재무제표 감사의견은 적정이나, 내부회계 감사의견은 비적정일 수 있으므로 재무제표뿐만 아니라 내부회계 감사의견도 확인할 필요
 - 내부회계 감사의견이 비적정인 경우, 내부회계의 중요한 취약점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향후 재무제표가 왜곡표시될 우려가 있음에 유의

IV 향후 계획

- 금감원은 회사·외부감사인에게 상기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감사의견 분석을 회계감독 업무에 활용할 예정
 - 또한, 회사가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보다 충실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25년부터 의무 시행되는「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속적으로 지원

붙임 **재무제표 및 내부회계 관리제도 감사의견 종류**

□ (재무제표 감사의견) 감사범위 제한 여부, 회계처리 기준 위배 여부, 계속기업 존속 가능성 등에 따라 적정·한정·부적정, 의견거절로 구분

구 분	적정의견	한정의견	부적정의견	의견거절
□ 감사범위 제한				
• 경미	○			
• 중요		○ ²⁾		
• 특히 중요				○ ³⁾
□ 회계처리기준의 위배				
• 경미	○			
• 중요		○ ²⁾		
• 특히 중요			○ ³⁾	
□ 계속기업 가정				
• 타당하나 중요한 불확실성 존재				
- 적절하게 공시	○ ¹⁾			
- 부적절하게 공시		○ ²⁾	○ ³⁾	
• 타당하지 않음			○ ⁴⁾	

- 1) 재무제표 주석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별도 단락에 계속기업 불확실성을 기재 (감사기준서 570 문단 22)
- 2) 그 영향이 중요하나 전반적이지는 않은 경우 (감사기준서 705 문단 7, 감사기준서 570 문단 23)
- 3) 그 영향이 중요하며 전반적임 (감사기준서 705 문단 8~9, 감사기준서 570 문단 23)
- 4)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계속기업 가정 적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감사기준서 570 문단 21)

□ (내부회계 감사의견) 중요한 취약점 식별 여부, 감사범위 제한 여부 등에 따라 적정, 부적정, 의견거절 세 가지로 구분

※ 내부회계 감사보고서는 재무제표 감사보고서와는 별도로 작성되며, 공시되는 재무제표 감사보고서에 별도 첨부

- (적정)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음
- (부적정)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중요한 취약점의 영향 때문에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지 않고 있음
- (의견 거절)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입수할 수 없으므로 의견을 표명하지 않음